

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56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9 . 6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사유

- 법률 제5894호('99. 2. 8)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등을 보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도로를 무단 점유한자에 대하여 그 점유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. (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- 도로법중 개정 관련 (법률 제5894호 : '99. 2. 8)
- 도로법 제80조의2 (변상금의 징수)

4. 입법예고 : '99. 7 . 14. ~ '99. 8. 2.

5. 본 문 : 붙임과 같 음.

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2의 제목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변상금”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“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”을 “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계정
<p>제6조의2(부당이익금의 징수)법 제40조 및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	<p>제6조의2(변상금의 징수).....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</p>